

본인확인서(FATCA · CRS 법인/임의단체용) 본문 설명서

가. 고객 정보

당사와 거래 시 제공하셨던 기본 정보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명은 국내법인의 경우, 영문으로 'REPUBLIC OF KOREA'로 기재해 주시고 국외 법인인 경우 알파벳 대문자로 해당국가의 정식 영문표기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법체의 법인등록번호는 국내법인이 아닌 경우 설립지 또는 소재지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등록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세목적상 거주지국 확인(한국인 경우 기재 생략)

본사 설립지국(조세목적상 거주지국)과 납세자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에 해당하는 경우 복수 기재 가능하며, 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번호 미기재 사유를 선택하여 주시고 미기재 사유가 미취득인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확인사항

① '미국법인'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 가. 미국 내에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
- 나. 미국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
- 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 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
 - 1) 미국에 소재하는 법원이 신탁의 운영 관련 실질적으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명령 또는 재판을 할 권한을 가질 것
 - 2) 한 명 이상의 미국인이 해당 신탁의 실질적 의사결정을 할 권한을 가질 것

② 금융기관 여부 : 금융기관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유형	설명
예금기관	예금기관 은행업과 유사한 통상적인 영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과정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기관 가. 자금의 대출 나.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외국환
수탁기관	타인을 위하여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행위가 주요한 영업이며 금융자산 보유와 이에 부수하는 금융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운영함에 따른 소득이 총소득의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 이 경우 소득의 산정은 산정일 이전 종료되는 회계연도 및 직전 2개 회계연도(기관의 존속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 기관의 존속기간)를 기준으로 한다 가. 보관, 계좌 관리 및 수수료 송금 나. 집행 및 가격책정 수수료, 그리고 증권거래에 대한 수수료 다. 고객에게 신용을 제공하여 얻는 소득 라. 주가등의 차액 및 금융자산의 매매가격차이에 대한 계약으로부터 얻는 소득 마. 투자자문 제공, 청산결제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투자법인	타인을 위하여 또는 타인을 대신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요한 영업으로 운영(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운영함에 따른 소득이 총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함) 기구 가. 단기금융시장에서의 거래(수표, 어음, 예금증서, 파생상품 등), 외국환, 환전, 이자율과 지수상품, 양도성 유가증권 및 상품선물거래 나. (타인으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관리 다. 그 밖에 타인을 대신하여 금전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 취득·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
특정 보험회사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을 발행하거나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과 관련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회사

③ 능동적 비금융법인 여부

③~④는 귀 법체가 '능동적 비금융법인'(또는 능동적 일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질의입니다. 각 항목별로 정의 및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형	설명
(1) 능동적수익을 창출하는 능동적 일반법인	직전 연도 또는 그 외의 적절한 보고기간 동안 총 수입의 100분의 50 미만이 수동적 수입(이자, 배당, 임대료, 연금, 자산의 매각·교환에서 발생한 이익, 선도·선물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및 현금가치보험계약으로부터 수취한 금액 등을 말함)이고, 직전 연도 또는 그 외의 적절한 보고기간 동안 비금융외국법인 보유한 자산의 100분의 50 미만이 수동적 수입을 창출하거나 수동적 수입의 창출을 위하여 보유된 경우



(2) 주권상장법인	KOSDAQ 등 국내외 증권시장에 당해법인이 발행한 주식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법인을 말함. 본 범주에는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법인도 포함됨. 특수관 계법인은 어느 한 법인을 다른 법인을 지배하거나 두 법인이 공동된 지배 아래 있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지배란 한 법인의 50% 이상의 의결권 또는 50% 이상의 가치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함을 의미함.
(3)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법인	하나 이상의 회사가 공통의 모회사를 통해 연결되어 있고, 모회사는 하나 이상의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함 과 동시에 그 회사 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며, 모회사를 제외한 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그룹
(4) 미국령 소재법인	미국령에 설립되고 미국령의 진정한 거주자(bona fide residents of that U.S. Territory)가 100% 소유하는 법인
(5) 지주회사/재무센터/전속금융회사	비금융외국법인의 모든 활동이 실질적으로 금융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 이상의 자회사의 발행 주식(전부 또는 일부)을 보유하거나 그러한 자회사 에 대하여 자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 경우. 다만, 비금융외국법인이 투자펀드(사모펀드, 벤처캐피탈펀드, 차입매수펀드, 회사를 인수하거나 회사에 자금을 제공하고 그 회사의 지분을 투자목적의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사업목적인 투자기구 등을 포함한다)로서 기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정부기관/국제기구/중앙은행	비금융외국법인이 정부, 정부의 정치적 하부조직, 정부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미국령의 정부, 국제기구, 미국 외 국가의 중앙 은행 또는 위 기관 및 법인들이 완전히 소유한 법인인 경우
(7) 신생 비금융법인	비금융법인이 아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며 이전에도 사업을 영위한 바 없으나,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 다만, 비금융법인의 최초설립일로 부터 24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청산 또는 조직 변경 중인 비금융법인	지난 5년간 금융회사가 아니었던 비금융외국법인이 자산을 청산하는 중이거나 금융업 이외의 사업의 운영을 계속하거나 재개하려는 의도로 조직변경 중인 경우
(9) 비금융 그룹	이전 3년 동안 금융소득의 비중이 총소득의 25% 이하이고, 금융소득 관련 자산의 비중이 총 자산의 25% 미만인 확장된 관계회사그룹
(10) 미국연방세법 제 501(c)법인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미국 연방세법 제501(c)조의 기관임을 확인하는 증서를 받았거나 미국 변호사로부터 미국 연방세법 제501(c)조의 기관임을 확인하는 의견서를 받은 기관
11) 공익적법인(단체)	비금융외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오직 종교적, 자선적, 과학적, 예술적, 문화적, 체육적 또는 교육적 목적을 위해 거주지 관할국 내에서 설립되고 운영될 것 또는 거주지 관할국 내에서 설립되고 운영되며 오직 사회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전문가조직, 사업자 법인, 상공회의소, 노동법인, 농업 또는 원예법인, 시민법인 또는 조직에 해당할 것 나. 거주지 관할국에서 소득세를 면제받을 것 다. 수입이나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수익권을 가진 주주 또는 구성원이 없을 것 라. 거주지 관할국의 관련 법령 또는 비금융외국법인의 설립 관련 문서가, 해당 비금융외국법인의 수입이나 자산이 개인 또는 비자선법인에게 분배되거나 개인 또는 비자선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 다만, 비금융외국법인의 자선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의 지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및 비금융외국법인이 구매한 재산의 공정시장 가치에 상응하는 지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한다. 마. 거주지 관할국의 관련 법령 또는 비금융외국법인의 설립 관련 문서가, 비금융외국법인의 청산 또는 해산 시 비금융외국법인의 모든 자산이 정부기관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분배되거나 거주지 관할국의 정부 또는 그러한 정부의 하위법인에 귀속될 것을 요구할 것

④ 해외납세자인 실질적지배자

귀 법인의 25% 초과하여 지분을 소유한 해외납세자인 실질적지배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질의입니다.



본인확인서(FATCA·CRS 법인/임의단체용) 별첨 설명서

A. FATCA 보고제외 미국인 - 미국법인 분류

⑤ 아래 열거된 기관들은 ‘보고제외 미국법인’ 유형에 해당하는 기관들로서 미국 연방세법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항목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아래 열거된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예]에 V를 표기한 후 분류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고 본인확인서(FATCA·CRS 법인/임의단체용) ②항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거된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아니오]에 V를 표기 후 본인확인서(FATCA·CRS 법인/임의단체용) ②항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거된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귀 법인은 보고대상 “특정미국인”에 해당하며 본인확인서(FATCA·CRS 법인/임의단체용) 나.항의 조세목적상 거주지국 및 미국 납세자등록번호인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9자리를 납세자번호(TIN)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유형	설명
(1) 주권상장법인	주식이 하나 이상의 증권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회사
(2) 주권상장법인의 관계회사그룹	주권상장법인 유형의 법인으로서 미국 연방세법 제 1471(c)(2)조에 정의된 50% 직·간접 소유권으로 형성된 관계회사그룹(expanded affiliated group)의 일원인 회사
(3) 미국 정부기관 등	미국, 미국정부소유기관, 미국정부대행기관
(4) 미국령 지역 관할정부(기관) 등	미국 주, 미국령 / 미국 주 또는 미국령의 정치적 하부조직 / 미국 주, 미국령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의 소유기관 또는 대행기관
(5) 미국에 설립된 특정 퇴직연금	미국 연방세법 제501(a)조에 정의된 면세기구 또는 미 연방세법 제7701(a)(37)조에 정의된 퇴직연금
(6) 미국 소재 은행	미국 연방세법 제581조에 정의된 은행
(7) 미국 소재 부동산투자신탁	미국 연방세법 제856조에 정의된 부동산투자신탁
(8) 미국 소재 특정 규제 대상	미국 연방세법 제851조에 정의된 규제 대상 투자회사 또는 1940년 투자회사법 (15 U.S.C. 80a-64)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법인
(9) 미국 소재 공동투자신탁펀드	미국 연방세법 제584(a)조에 정의된 공동투자신탁펀드
(10) 미국 소재 특정 면세 신탁 등	미국 연방세법 제664(c)조에 의하여 조세가 면제되는 신탁 또는 미 연방세법 제4947(a)(1)조에서 정의하는 신탁
(11) 미국 소재 특정 금융상품 딜러	유가증권, 상품, 파생금융상품(명목원금계약, 선물, 선도, 옵션 포함)의 딜러로서 미국연방법 또는 주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
(12) 미국 소재 특정 중개인	미국 연방세법 제6045(c)조에 정의된 중개인

B. 금융기관 - 금융기관 분류

⑥ ②에서 [예]에 V를 표기한 경우로서 귀 법인이 금융회사일 경우 기재하는 정보로 a, b, c, d (e-f) 항목 모두 작성합니다.

a	CRS 협력관할권이 아닌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고, 다른 금융회사가 지분을 소유하는 투자법인으로 실질지배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 후 b 항목으로 이동 합니다.
b	국내 금융회사 또는 FATCA 협정체결국 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후 c 항목으로 이동 합니다.
c	FATCA에 참여하지 않거나 미국국세청(IRS)으로부터 비참여 금융회사로 분류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후 d 항목으로 이동 합니다.
d	글로벌금융기 등록번호(GIIN) 귀 법인이 미국 국세청(IRS)로부터 발급받은 글로벌금융기관등록번호(GIIN) 19자리가 있으시면 해당란에 기재해 주시고 이하 항목에 답 변할 필요없이 본인확인서(FATCA·CRS 법인/임의단체용) 본문의 『라.본인확인』 문구를 확인하시고 작성일자과 법인명을 기재한 후 법 인인간을 날인하여 당해 별첨과 함께 당사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고 다 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금융기관의 유형[FATCA비보고대상 유형] [CRS비보고대상 유형]		
귀 법인이 아래 열거된 금융기관유형 중 해당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경우 [예]에 V표를 기재하시고 나머지 별첨은 작성하실 필요없이 본인확인서(FATCA· CRS 법인/임의단체용) 본문의 『라.본인확인』 문구를 확인하시고 작성일자과 법인명을 기재한 후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당해 별첨과 함께 당사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FATCA비보고대상 유형]과 [CRS비보고대상 유형] 모두 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FATCA비보고대상 유형]		설명
e·f	이행간주 금융회사 (1) 지역고객 기반 금융회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기관
		가. 법에 따라 금융회사로 인가받고 규제될 것 나. 한국 이외의 지역에 고정된 영업소(대중에 광고되지 않고 행정적인 지원 기능만을 수행하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가지지 아니할 것 다.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고객 또는 계좌보유자를 유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 또는 계좌 보유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웹사이트를 운영하되, 웹사이트에서 비거주자에게 금융계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특별히 표시하거나 달리 미국 고객이나 계좌보유자를 목표로 유치하지 않는 경우 2) 주로 한국 내에서 주로 배포되거나 방영되지만 부수적으로 타국에서 배포되거나 방영되는 인쇄매체,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에 광고를 광고를 하되, 광고에서 비거주에게 금융계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특별히 표시하거나 달리 미국고객이나 계좌보유자를 목표로 하거나 유치하지 않는 경우. 라. 거주자가 보유하는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보고 또는 원천징수 목적 또는 자금세탁방지 절차에 따른 실사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주자인 계좌보유자를 확인하도록 요구될 것 마. 유지하는 금융계좌 가치의 100분의 98 이상을 거주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보유할 것 바. 금융회사는 늦어도 2014년 7월 1일부터 비참여금융회사에 금융계좌를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고 다음 각각의 자를 위하여 금융계좌를 개설·유치하지 않도록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할 것 1) 거주자가 아닌 특정미국인(계좌개설시에는 거주자였으나 그 이후에는 거주자가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2) 실질지배자가 거주자가 아닌 미국 거주자이거나 미국 시민권자인 수동적 비금융외국법인 사. 바의 정책 및 절차는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계좌를 소유한다고 확인될 경우, 그 계좌를 보고 금융회사와 동일 하게 보고(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의 관련 등록요건을 따르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것 1) 거주자가 아닌 특정미국인 2) 실질지배자가 거주자가 아닌 미국 거주자 또는 미국 시민권자인 수동적 비금융외국법인 아.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 보유하는 기존계좌 또는 법인이 보유하는 기존계좌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보고 금융계좌 또는 비참여금융 회사가 보유한 금융계좌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계좌를 검토하여야 하며, 보고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보고(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의 관련 등록요건을 따르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계좌를 해지할 것 자. 금융회사인 특수관계법인은 각각 한국에서 설립되어야 되어야 하고, 금융회사로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것 차. 금융계좌 개설 및 유지에 있어 특정미국인이며 거주자인 개인을 차별하는 정책이나 관행을 가지지 아니할 것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기관
e·f	이행간주 금융회사 (1) 지역고객 기반 금융회사	가. 다음 각각의 금융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주요한 영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소매고객에 대한 예금 수신 또는 대출인 은행 2) 주요한 영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소매고객에 대한 예금 수신 또는 대출인 상호저축은행 3) 주요한 영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소매고객 또는 조합원에 대한 예금 수신 또는 대출으로 총 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는 조합원이 없는 협동조합 나. 금융회사가 위의 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다. 웹사이트를 통해 최초 금융계좌가 개설되지 아니할것. 다.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미화 1억 7,500만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특수관계법인의 연결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미화 5억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마. 금융회사의 각 특수관계법인로서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것은 한국에서 설립 또는 조직되어야 하며, 퇴직연기금이나 소액계좌 금융 회사를 제외하고, 같은 각 목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것



e·f	이행간주 금융회사	(3) 소액계좌 금융회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기관
			가. 투자법인이 아닐 것 나. 금융회사 또는 특수관계법인에 의하여 유지되는 금융계좌의 잔액 또는 가액이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금융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미화 5천만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금융회사와 특수관계법인의 연결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미화 5천만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수탁자 자 료제출형 신탁	신탁의 수탁자가 미국의 금융회사, 협정상 보고 금융회사 또는 참여금융회사이고 모든 보고 금융계좌의 정보를 보고하는 신탁
		(5) 피후원 투자 기구	적격대리 금융회사, 원천징수 비미국조합, 원천징수 비미국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인이 다음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후원 기관이 되기로 동의한 투자법인(투자법인라는 이유만으로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의 관련 등록요건의 이행을 위하여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행위할 권한을 부여받을 것 나.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후원기관으로 등록할 것 다. 금융회사 관련 보고 금융계좌를 확인할 경우 2015년 12월 31일 또는 보고 금융계좌가 처음으로 확인된 후 90일이 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이전에 금융회사를 등록할 것 라.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금융회사가 보고 금융회사라면 이행할 모든 실사,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는 데 동의할 것 마.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이행하는 모든 보고에 금융회사를 표시하고 금융회사의 식별번호를 포함할 것 바. 후원자로서의 지위를 취소하지 아니할 것
			적격대리 금융회사, 원천징수 비미국조합, 원천징수 비미국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피지배 외국회사
			가. 미국의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후원기관으로 되기로 동의한 경우 그 미국의 금융회사에 의해 완전히 소유되는 금융회사일 것 나. 후원기관이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보유자와 수취인을 확인하고, 금융회사가 유지하는 모든 계좌·고객정보(고객식별번호, 고객서류, 계좌잔액, 계좌보유자 또는 수취인에 대한 지급액을 포함한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공통의 전산계좌시스템을 후원기관과 공유할 것
		(7) 피후원 폐쇄형 투자기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기구
			가. 적격대리 금융회사, 원천징수 비미국조합, 원천징수 비미국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법인(투자법인라는 이유만으로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후원기관이 미국의 금융회사, 협정상 보고 금융회사 또는 참여금융회사로서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행위할 권한을 부여받고,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금융회사가 보고 금융회사라면 이행할 모든 실사,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는데 동의할 것 다. 금융회사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법인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할 것 라. 20명 이하의 개인이 금융회사의 채권지분 및 주식지분을 소유할 것 다만,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지분 또는 주식지분은 제외한다. 참여 외국금융회사 및 이행간주 외국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채권지분 본란에 해당하는 법인이 전부 보유하는 주식지분 마. 후원기관은 다음 각각의 요건을 충족할 것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후원기관으로 등록할 것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금융회사가 보고 금융회사라면 이행할 모든 실사,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는데 동의하고 금융회사와 관련 수집한 문서를 6년간 보관할 것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이행하는 모든 보고에 금융회사를 표시할 것 후원자로서의 지위를 취소하지 아니할 것
		(8) 금융회사 자료제출형 투 자법인	한국에서 설립되었으며 비참여금융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고객의 명의로 예치된 자금의 투자, 운용 또는 관리를 목적으로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투자법인
			가. 투자자문 제공 나. 자금의 운용(그 지분이 비참여금융회사가 아닌 금융회사를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포함한다)



e·f	이행간주 금융회사	(9) 국내설립 면제 집합투자 기구	한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모든 지분(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채권지분 포함)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의하여 또는 통하여 보유되는 경우 가. 정부단체, 국제기구, 한국은행, 공공기관, 단, 특정보험회사, 수탁기관, 예금기관에서 수행하는 유형의 상업적 금융활동과 관련된 의무에서 파생된 지급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나. 능동적 비금융외국법인 다. 특정미국인이 아닌 미국인
		(10) 한시적 채권 발행기구 (2017년 1월 1 일까지만 적용)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는 이행간주 금융회사에 해당한다. 다만, 금융회사가 적격대리 금융회사, 원천정수 비미국조합 또는 원천정수 비미국신탁인 경우 미국 세법에 따른 원천정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투자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회사에 해당할 것 나. 금융회사가 발행한 지분은 유통시장에서 투자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금융회사에 의하여 상환되거나 양도될 것(금융회사가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무기명식 지분을 발행하지 않았고, 2017년 1월 1일 이전에 그러한 모든 지분을 상환하거나 유통을 정지시키기 위한 방침 및 절차를 수립 할 것) 다. 금융회사가 직접 발행하지 않은 지분은 참여 금융회사, 등록형 이행간주회사, 현지은행 등에서만 판매 라. 금융회사가 2014년 6월 30일 또는 이행간주 금융회사로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중 나 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특정미국인, 비참여금융회사 또는 하나 이상의 실질 미국 소유자가 있는 수동적 비금융외국법인에 대한 해당 금융회사의 채권지분 또는 주식지분 의 판매 또는 양도가 금지 되도록 할 것 마. 금융회사는 2014년 6월 30일 또는 이행간주 금융회사로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중 나 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다목에 따른 판매사의 지위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 내에 판매사와의 판매계약을 종료시키고 판매사를 통해 발행된 모든 채권지분 및 주식지분을 판매사의 지위에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환, 전환 또는 양도할 것이라는 점을 미국 국세청에 증명할 것 바. 금융회사가 보고 금융계좌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계좌를 실시할 것. 다만, 판매계약 및 투자설명서에 미국법인과 미국 거주 개인에 대한 지분의 발행 및 판매가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금융회사는 늦어도 2014년 7월 1일부터 비참여금융회사에 금융계좌를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고 다음 각 목의 자를 위하여 금융계좌 를 개설유지하지 않도록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할 것 1) 거주자가 아닌 특정미국인 (계좌개설시에는 거주자였으나 그 이후에는 거주자가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2) 비참여금융회사 3) 실질지배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이고 거주자가 아닌 수동적 비금융외국법인 아. 제 아목의 정책 및 절차는 제 아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계좌를 소유한다고 확인될 경우, 그 계좌를 보고 금융회사와 동 일하게 보고(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의 관련 등록요건을 따르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것 자.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일 경우,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참여 금융회사, 이행간주 금융회사 또는 적용면제 실질 소유자일 것
		(11) 적격 퇴직연금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거주자로서 미국원천 발생 소득에 대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에 이종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에 따른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가질 것 나. 주로 연금 또는 퇴직급여를 관리 · 제공하기 위해 운영될 것
		(12) 다수참여 퇴직펀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한국에서 설립된 펀드일 것 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 이상의 사용자의 현직 또는 전직 근로자인 수익자(근로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퇴직 보험금, 장애 보험금 또는 사망 보험금 등이 결합된 보험금을 제공할 것 다. 펀드 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단독 수익자를 보유하지 아니할 것 라. 펀드의 수익자에 관련된 정보를 관련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것 마. 다음 각각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 1) 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을 것 2) 사용자가 총 분담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여할 것 3) 퇴직, 장애 또는 사망과 관련된 특정 사건(이하 이 조에서 “특정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한 때에만 분배 또는 인출이 가능할 것 4)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루어진 분배 또는 인출에는 불이익이 부과될 것 5) 근로자의 분담금이 근로소득에 따라 제한되거나 연간 미화 5만달러 이하일 것



e-f	비보고 금융회사	(13) 소수참여 퇴직펀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한국에서 설립된 펀드일 것 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 이상의 사용자의 현직 또는 전직 근로자인 수익자(근로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퇴직 보험금, 장애 보험금 또는 사망 보험금 등이 결합된 보험금을 제공할 것 다. 참가자가 50인 미만일 것 라. 투자기구 또는 수동적 비금융외국법인이 아닌 하나 이상의 사용자만 기여할 것 마. 근로자 및 사용자의 부담금이 근로소득 및 보수에 따라 각각 제한되는 펀드 바. 펀드 자산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거주자가 아닌 참가자가 보유하지 아니할 것 사. 펀드의 수익자에 관련된 정보를 관련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것
		(14) 정부단체 등의 연금펀드	정부단체등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퇴직 보험금, 장애 보험금 또는 사망 보험금 등 제공하기 위 한 펀드를 말한다. 가. 정부단체등의 현직 또는 전직 근로자인 수익자 또는 참가자(근로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정부단체, 국제기구, 또는 한국은행을 위하여 인적 용역을 제공한 수익자 또는 참가자
		(15) 특정 투자법인	'적용면제 실질 소유자'가 완전히 소유하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법인 가. 투자법인라는 이유만으로 금융회사일 것 나. 적용면제 실질 소유자만 직접 법인의 주식지분을 소유할 것 다. 예금기관(투자법인에 대출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적용면제 실질 소유자만 직접 법인의 채권지분을 소유할 것
		(16) 별정 우체국 연금관리단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구분 [CRS비보고대상 유형]		설명
	CRS 비보고 대상유형	(17) 국내지점 전용 금융회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회사 가. 국내법에 따라 금융회사로 인가를 받고 규제될 것 나.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비거주자와 금융계좌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다. 금융회사가 자금세탁방지 절차를 준수할 것 라. 금융회사가 외국에 지점 등을 설치할 수 없을 것 마. 조세의 원천징수 목적상 매년 금융계좌와 관련한 소득세를 징수하고 국세청에 보고 및 납부할 것
		(18) 금융 위원회 인정 금융회사	타국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대한민국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거래를 하는 금융회사로서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낮다고 금 융위원장이 인정하는 금융회사
		(19) 수탁자 자료제출형 신탁	신탁의 수탁자가 미국의 금융회사, 보고 금융회사 또는 참여금융회사이고 모든 보고 금융계좌의 정보를 보고하는 신탁
		(20) 금융회사 자료제출형 투자법인	한국에서 설립되었으며 비참여금융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고객의 명의로 예치된 자금의 투자, 운용 또는 관리를 목적으로 고객을 위하 여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투자 법인 가. 투자자문 제공 나. 자금의 운용(그 지분이 비참여금융회사가 아닌 금융회사를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포함한다)
		(21) 면제집합 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로 규제되는 투자단체로서, 보고대상인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가 집합투자기구의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 하며, 보고대상 인이 실질적지배자인 수동적 비금융단체는 제외 할 것



e-f	CRS 비보고 대상유형	(22) 다수참여 퇴직펀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한국에서 설립된 펀드일 것 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 이상의 사용자의 현직 또는 전직 근로자인 수익자(근로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퇴직 보험금, 장애 보험금 또는 사망 보험금 등이 결합된 보험금을 제공할 것 다. 펀드 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단독 수익자를 보유하지 아니할 것 라. 펀드의 수익자에 관련된 정보를 관련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것 마. 다음 각각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 1) 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을 것 2) 사용자가 총 분담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여할 것 3) 퇴직, 장애 또는 사망과 관련된 특정 사건(이하 이 조에서 “특정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한 때에만 분배 또는 인출이 가능할 것 4)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루어진 분배 또는 인출에는 불이익이 부과될 것 5) 근로자의 분담금이 근로소득에 따라 제한되거나 연간 미화 5만달러 이하일 것
		(23) 소수참여 퇴직펀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한국에서 설립된 펀드일 것 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 이상의 사용자의 현직 또는 전직 근로자인 수익자(근로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퇴직 보험금, 장애 보험금 또는 사망 보험금 등이 결합된 보험금을 제공할 것 다. 참가자가 50인 미만일 것 라. 투자기구 또는 수동적 비금융외국법인이 아닌 하나 이상의 사용자만 기여할 것 마. 근로자 및 사용자의 분담금이 근로소득 및 보수에 따라 각각 제한되는 펀드 바. 펀드 자산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거주자가 아닌 참가자가 보유하지 아니할 것 사. 펀드의 수익자에 관련된 정보를 관련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것
		(24) 정부단체 등의 연금펀드	정부단체등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퇴직 보험금, 장애 보험금 또는 사망 보험금 등 제공하기 위 한 펀드를 말한다.
			가. 정부단체등의 현직 또는 전직 근로자인 수익자 또는 참가자(근로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정부단체등을 위하여 인적 용역을 제공한 수익자 또는 참가자
		(25) 별정 우체국 연금간리단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C. 실질적지배자

- ⑦ ④에서 [예]에 V를 표기한 경우로써 해외납세자인 실질적지배자가 한명이라도 존재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귀 법인에 대한 지분을 25% 초과 보유한 해외납세자인 실질적지배자의 영문성명, 주소, 납세자번호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번호 미기재 사유를 선택하여 주시고 미기재 사유가 미취득인 경우 사유를 기 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별첨은 작성하실 필요없이 본인확인서(FATCA · CRS 법인/임의단체용) 본문의 『라.본인확인』 문구를 확인하시고 작성일자과 법인명을 기재한 후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당해 별첨과 함께 당사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